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8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안태준·박해철·황정아

조인철 • 이기헌 • 한준호

소병훈 · 서영석 · 정준호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주민 전체가 합의"를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방법"을 "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범위 및 동의 절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별 지원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별 지원금이 결정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에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	②		
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			
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u>주민 전체가 합의</u> 한 경우	<u>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u>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u>의</u>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③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			
행기간 및 <u>지원방법</u> 등에 필요	지원방법과 제2항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따른 주민의 범위 및 동의 절		
다.	<u>차</u>		